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성결대학교 대학원 학칙의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사에 관한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제2조 (입학 응시자격)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 · 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받은 자
3. 중등2급 교원자격증, 전문상담교사 1급 이수증, 부전공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의 입학자격은 교육부 관련법령 및 고시,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하여 정한다.

제3조 (입학구비서류) 본 대학원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간까지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3. 대학 진학년 성적증명서 1통
4. 교사 자격증 사본 1통
5. 재직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통

제4조 (전형방법) 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세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5조 (편입학) ①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동일계열 전공에 한하여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 학년 및 학점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하되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편입학 절차는 신입생 전형절차에 준용한다.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2-7)

제6조 (재입학) ① 재입학은 동일전공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재입학 사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개정2006.10.1)

② 징계제적자와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다만 재학연한 초과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4.9.1.).

③ 재입학자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입학허가) ① 입학허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전형 합격자를 선정하며 합격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교과과정 및 이수

제8조 (교과과정) 본 대학원에 설치된 전공별 이수 교과과정은 각 전공별 교과과정표와 교직교과 과정표에 의한다.

제9조 (교과의 이수) ① 각 전공별 최저이수학점은 24학점이상으로 한다.

구 분	전공	논문	졸업이수 요구학점	비고
유아교육	24	P	24	1. 논문 대체시 6학점 추가이수 2.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필수학점 추가 취득 가능
상담심리	24	P	24	
체육교육	24	P	24	
미용교육	24	P	24	
연극영화교육	24	P	24	

②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추가로 이수하는 필수과목은 1항의 총 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본인 희망에 따라 졸업논문을 교과목 6학점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06.10.1.)

④ 교원양성과정은 입학 전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전공)을 졸업하고 취득한 전공과목의 학점을 26학점까지, 교직과목은 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설치되고 수강과목이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원양성과정 입학생이 정교사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직이론 영역과 현장교육실습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2009학번 이후 신설된 교직소양 3과목(6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2-7)

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해야 하며, 그 외에 교원 무시험검정에 요구되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1과 같다.

⑦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다.

제9조의 2 (조기졸업자 교과이수)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의 지원자격은 1학기를 마친 자로 한다. 다만 교원양성과정은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1학기말 소정기간 내에 교학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으며, 2차 학기부터 매 학기 9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개정2006.10.1)

제10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2006.10.1)

②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기졸업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자는 예외로 하되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4항을 적용한다.

③ 교원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필수과목의 학점은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④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본 대학 학부 학생이 대학원 개설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 또는 대학원생이 학부의 개설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 전체 학기 합산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⑥ 본 대학 학부 학생이 대학원 개설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과목의 수강인원에 따라 학부생의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⑦ 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소양영역 일부(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교육실습영역 전체 면제하고, 교직소양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학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고,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수강신청변경) ①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은 개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② 수강신청자는 소정 기간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 결과를 조회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학부 또는 본 대학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교 대학원 및 본 교내 타 대학원의 강좌를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6.10.1)

제12조 (수강신청과목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학기개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2-7)

시 후 8주째 주간에 담당교수와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③ 철회한 과목은 학적부 상에는 “W”(withdraw)로 표시된다.

제12조의 2 (수강과목 폐강) ① 이미 개설한 강좌라도 수강인원이 전공별 개설학기 재학인원의 20%미만일 경우 그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② 전공별 개설학기 재학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수강인원 2명 이하인 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

제13조 (성적) 성적은 담당교수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확정 처리한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수의 착오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소정기간내에 성적정정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개정2006.10.1)

제13조의 2 (학점포기신청) ① 학점포기를 원하는 자는 학점포기원서를 정해진 기간내에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점포기는 최저이수요구학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마지막 학기에 신청하며, 포기학점은 성적증명서에서 삭제한다.

제13조의 3 (성적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은 출석, 시험, 발표, 과제물 등의 성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석성적은 2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의 1/4이상 결석한 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4 (휴학자 성적 인정) ① 입대, 일반(질병휴학에 한함)휴학자 성적은 출석일수 12/15이상 수강한 자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할 수 있다.

② ①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학과로 휴학자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등록, 휴·복학

제14조 (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되며, 재학생의 자격을 갖게 된다.

② (삭제 2004. 10. 1)

③ 개강 후 7일 이내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은 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2006.10.1)

④ 수업연한 초과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2-7)

하여야 한다.

1. 신청학점이 1학점이상 3학점이하: 등록금의 2분의 1을 납부
2. 신청학점이 4학점이상 :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
- ⑤ 학위논문, 종합시험 등의 불합격으로 정규학기에 졸업을 못한 경우 관련분야의 응시료 및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등록으로 인정한다.(개정2006.10.1)
- ⑥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제4항에 의하여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2006.10.1.)
- ⑦ 조기졸업 신청자는 초과학점 이수학기에 1.5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 (분납제) ① 학생은 등록금을 분할 납부(이하 “분납”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분납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재무회계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 편입생 및 학기 초과자는 분납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분납을 신청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분납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학생은 대학원 학칙 제23조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제14조의 3 (등록금 반환사유)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교에 입학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4조의 4 (등록금 등의 반환기준) ①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②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2-7)

③ <삭제 2006.10.1>

④ 1차 분납금만 납부한 학생이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반환은 제2항과 같으며, 공제 후 1차 분납금이 반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가 취소되며, 제2항에 의한 등록금 반환금액 산정 시에는, 장학금 상당액이 감면된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장학금을 등록금 감면 외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기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학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등록에 관하여 이 세칙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제15조 (휴학의 종류)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 창업휴학, 육아(임신·출산 포함)휴학으로 구분한다.

1. 일반휴학: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해 학기 수학이 불가능할 때의 휴학

2. 입대휴학: 군입영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지원입대로 인한 휴학

3. 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한 휴학

4. 육아휴학: 육아(임신·출산 포함)로 인해 수학이 불가능할 때의 휴학

제15조의 2 (휴학원 제출) ① 미등록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휴학원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교학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대휴학자와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복학예정자는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질병)휴학: 종합병원 진단서 등

2.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3.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 (다만 창업휴학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4. 육아(임신·출산 포함): 임신확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②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 경과 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질병(종합병원 진단서 첨부)

2. 창업으로 인한 휴학

3. 육아(임신·출산 포함)로 인한 휴학

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첨부)

④ 일반휴학 기간 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대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2-7)

제15조의 3 (휴학기간) ① 일반휴학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및 육아(임신, 출산 포함), 창업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 학적부에 등록된 장애학생은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등록을 마친 자로서 학기 개학일로부터 3/15이 경과된 후 휴학한 자의 등록금의 효력은 소멸된다.

④ 입대, 질병으로 인한 휴학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일수 12/15이상 경과시에 등록금 효력이 소멸되며 해당 학기 수업은 모두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제15조의 4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학생에게는 해당 학기에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휴학, 4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 5 (복학) ①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수강신청기간 이내에 복학원을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입대휴학자는 전역증명서 첨부).

② 휴학기간 종료까지 복학 또는 휴학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미복학제적 된다.

③ 입대휴학자가 개강일 이후 복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역일이 총 수업일수의 5/15이내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 학기의 출결은 복학자 본인이 책임으로 한다.

1. 복학신청서
2. 전역예정증명서
3. 본인서약서

제 5 장 외국인 학생

제16조 (입학) ① 학칙 제7조의 자격이 있는 외국인 학생의 입학은 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6.10.1)

② 외국대학을 졸업한 자는 대학원학칙 제7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에 해당한다.

제17조 (전형) ① 외국인 학생 입학전형은 특별전형에 의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전공분야 수학이 가능한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있어야 하며, 본 대학원은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일정 성적(석사학위과정의 경우 3급) 이상의 취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형방법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 6 장 종합시험

제18조 (응시자격) ① (삭제 2001. 3. 1)

②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3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조기졸업 대상자는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제19조 (시험과목) ① (삭제 2001. 3. 1)

② 종합시험은 각 전공별로 지정한 과목중 2과목을 선택한다.(개정2006.10.1)

제20조 (출제범위) ① (삭제 2001. 3. 1)

② 종합시험은 각 전공별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한다.

제21조 (시험일시) ① (삭제 2001. 3. 1)

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실시한다.(개정2006.10.1)

제22조 (응시절차)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료와 응시원서를 지정기일 내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시료는 시험종류별로 부과하며 과목별 재시험시에도 동일하다.

제23조 (합격인정 및 기준) ① (삭제 2001. 3. 1)

② 종합시험 70점이상 득점으로 한다.(개정2006.10.1)

제24조 (과목합격) 종합시험은 전공별 과목 합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 (재시험) ① 불합격한 과목을 재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없다.(개정2006.10.1)

제26조 (응시제한) <삭제 2006.10.1>.

제 7 장 학위논문

제27조 (제출자격) 본 대학원 학생의 학위논문 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9조에 의한 전공별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성적 평균평점이 3.0이상 인 자(개정 2006.10.1)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개정2006.10.1)
3. 학위논문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한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은 자
4. 논문지도비 및 논문심사비를 납부한 자

제28조 (논문지도교수 배정)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주제(제목)를 결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2-7)

정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상의한 후 희망논문지도교수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논문지도교수 신청은 4학기부터 할 수 있다.

- ②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본 대학교 전임교수로 한다.
- ③ 논문지도를 시작한 후에는 논문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지도교수의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제29조 (학위논문계획서) ①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계획서와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교학과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학위논문계획서와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는 3월 넷째주 또는 9월 넷째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 제목을 수정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원장은 제출된 학위논문계획서를 4월 첫째주 또는 10월 첫째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제30조 (논문원고제출) ①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정기일 내에 논문원고 3부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각 해당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8.01.08.>

제31조 (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눈다.

- ② 논문심사 방법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수로서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자가 주심이 되고 부심 2인을 전공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특별한 경우 부심 1인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타교 교원으로서 조교수 이상인 자
 2.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한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근무한 자
 3. 기타 위 1, 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32조 (논문예비심사) ① 논문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1회의 예비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개정2006.10.1)

- ② 논문예비심사는 4월 넷째 주 또는 10월 넷째 주까지 실시한다.
- ③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예비심사에 참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논문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문내용의 취급방법 및 연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정보완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⑤ 심사위원회 주심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전공 주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2-7)

임 교수에게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06.10.1)

제33조 (논문본심사) ① 논문제출자는 논문 본심사를 위한 논문 인쇄본 3부를 5월 넷째 주 또는 11월 셋째 주까지 전공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으로 시행한다(개정2006.10.01.).

③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논문 본 심사는 5월 넷째주 또는 11월 넷째 주까지 실시한다.

제34조 (논문평가) ①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의 승인으로 한다.

②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와 병행하여 시행하며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평가하고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이때 논문심사는 논문제출자의 출석 없이 시행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학위논문평가 보고서를 심사위원 연서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학위논문제출) 학위논문 본 심사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최종본 원문 파일을 dCollection에 탑재한 후 제출확인서 및 저작권동의서를 완성된 학위논문 5부와 함께 6월말 또는 12월말까지 대학원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학위논문의 작성

제36조 (구비사항) 학위청구논문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논문표지(서식1)
2. 속표지(서식2)
3. 인준서(서식3)
4.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에 한함)
5. 목차(서식4, 수표 또는 도표차례 포함)
6. 논문요약(2면 이내로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사용)
7. 본문(각주는 일련번호로 한다)
8. 참고문헌: 논문작성에 이용한 참고문헌을 국내, 국외로 구별하여 저자의 성명을 가, 나, 다순 또는 A, B, C순으로 기재
9. 부록, 색인, 기타(필요한 경우에 한함)
10. 영문요약(서식5, 2면 이내로 함)

제37조 (분량) 한글 기준 줄 간격 200%로 작성하고 학위논문의 분량은 60페이지 이상으로 한다.

제38조 (규격) 학위논문은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2-7)

1. 용지: 70파운드 백색 모조지
 2. 규격 : 4×6배판(가로182mm, 세로257mm)
 3. 인쇄방식: 단면 인쇄하되 공판타자, 활판인쇄 또는 컴퓨터인쇄(300dpi이상)으로 하며, 활자의 크기 10P, 가로 40~45자, 세로 28~32행으로 함.
 4. 제본형식: 클로스양장
 5. 표지색: 곤색
 6. 표지인쇄방식: 신명조체 22P 활자로 하고 금색으로 인쇄한다.
 7. <삭제 2019.05.01.>
- 제39조 (논문작성방법)** 논문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대학원이 제시하는 논문작성법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8조)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조, 제2조, 제5조~제39조)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조)은 199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중 제9조의 2는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9조)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2-7)

①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6조, 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16조의 4)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업료 및 입학금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세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 및 입학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 제6조, 제9조, 제9조 2,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3조 2, 제14조, 제14조의 4, 제16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4조의4)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4조, 제14조의4, 제29조)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5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6조)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3조의 2, 제13조의 3)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9조, 제18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대학원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2-2-7)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9조, 제9조의 2)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 2, 제14조의 3, 제14조 4, 제16조, 제17조, 제27조, 제35조)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0조, 제1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4조)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7조, 제38조)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3조의 4, 제15조, 제15조의 2, 제15조의 3, 제15조의 4, 제15조의 5, 제34조)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0조)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9조)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입학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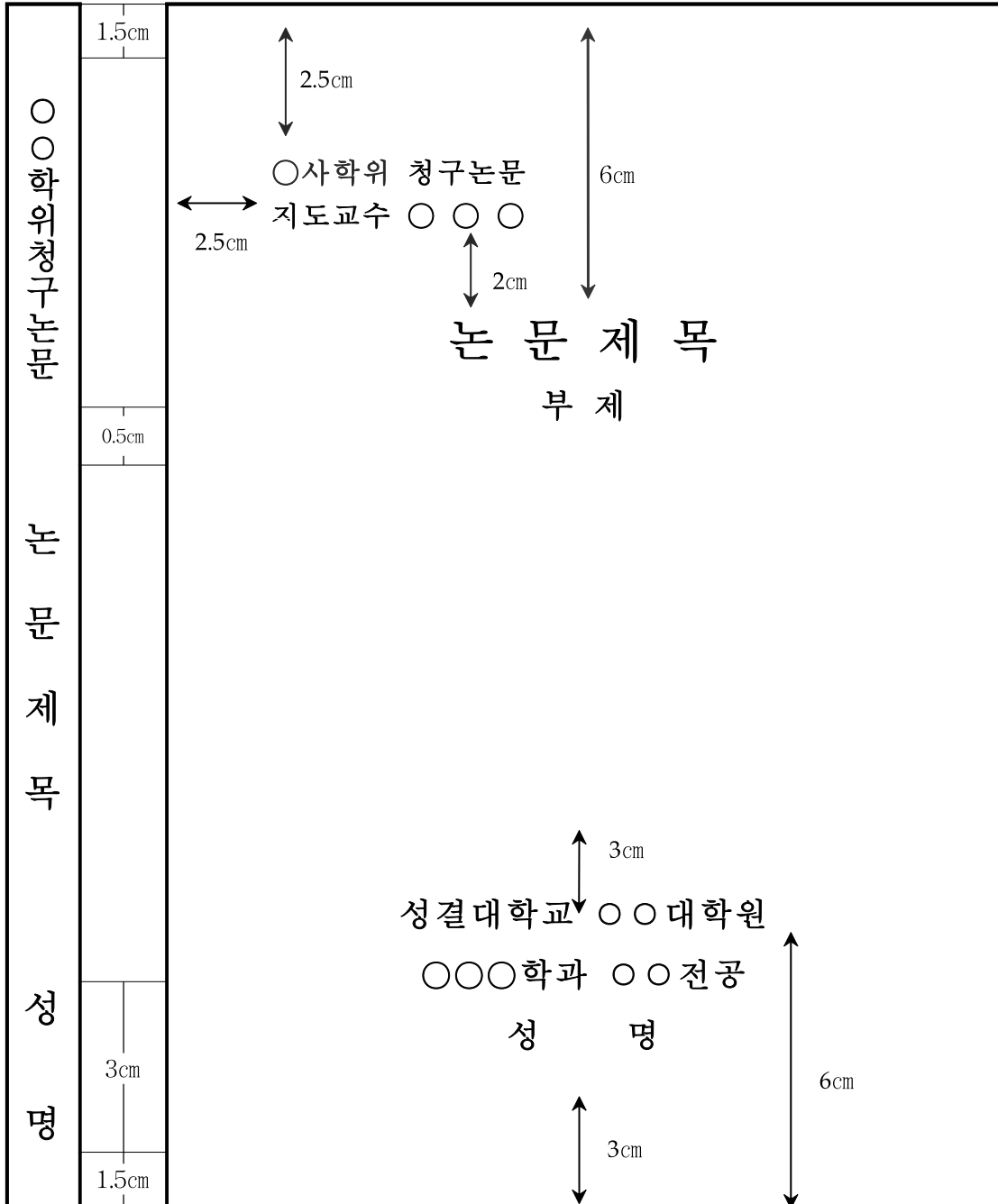
(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1조)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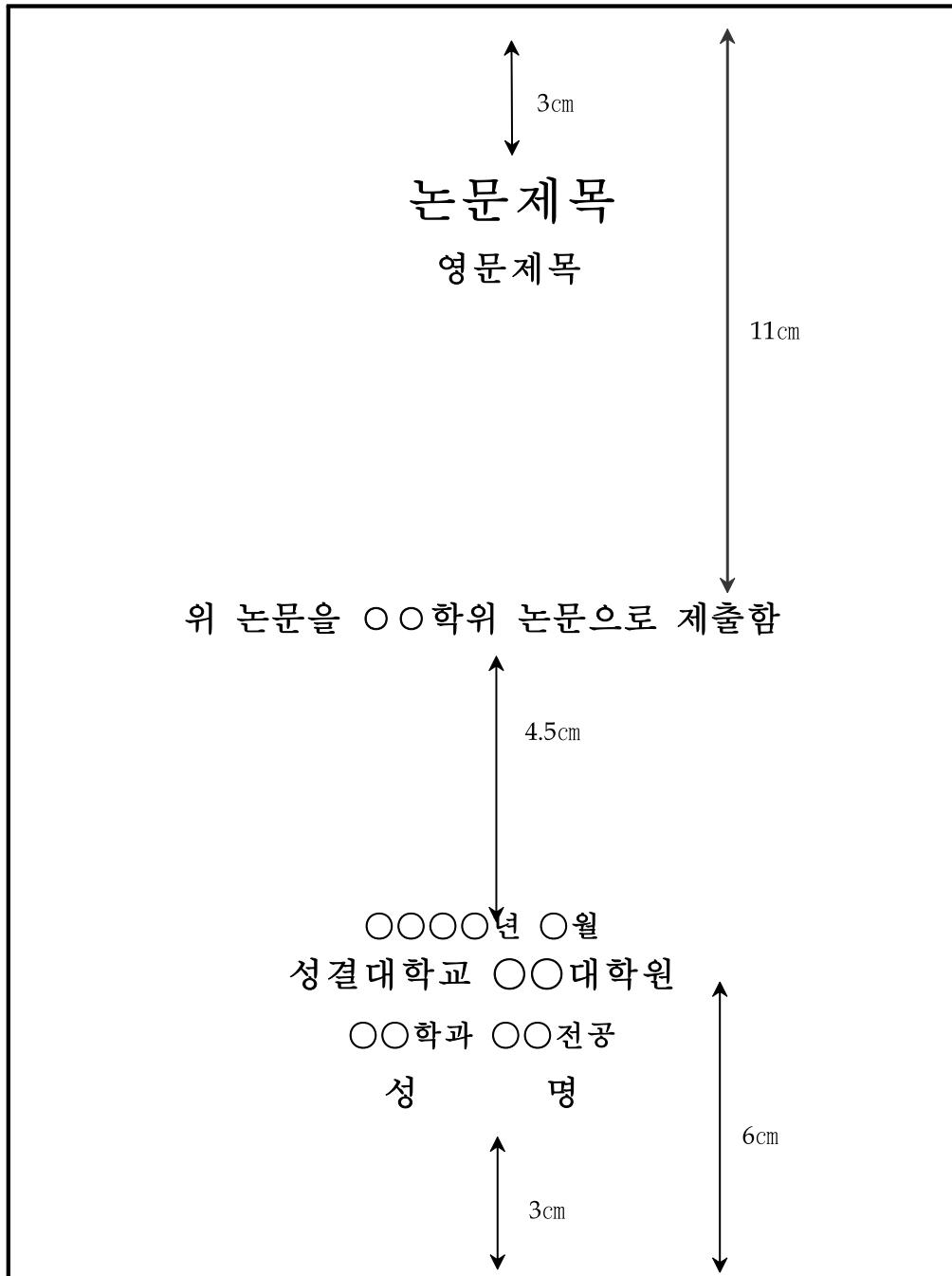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	
		1급	2급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정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28학점 이상 (14과목 이상)
* 비고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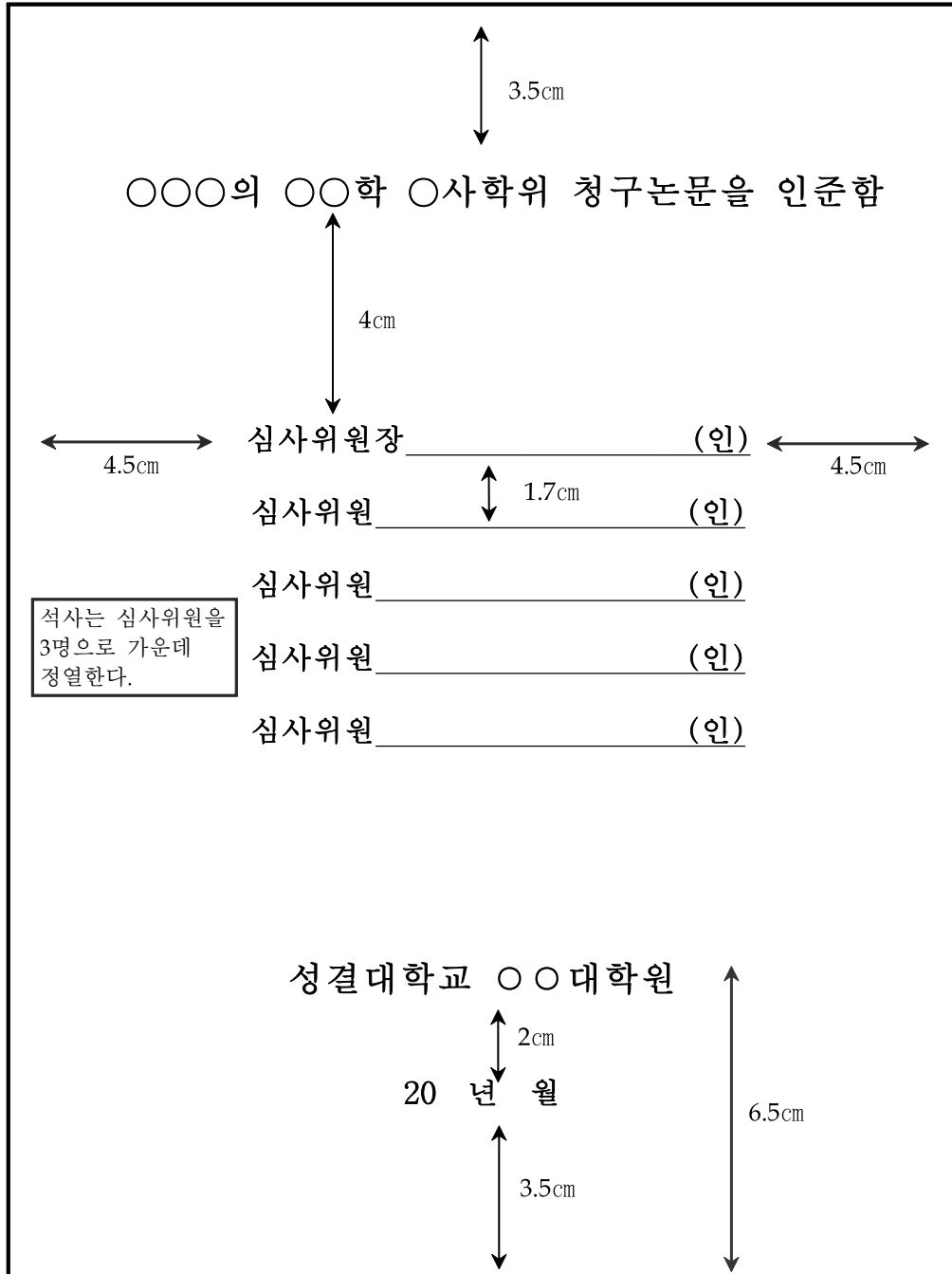
(서식 1) 논문표지 양식



(서식 2) 속표지 양식



(서식 3) 인준서 양식



(서식 4) 목차양식

목차

표목차	ii
그림목차	iii
국문초록	iv
제1장 서론	1
제1절.....	1
제2절	4
1.	6
2.	8
제2장	10
제1절	14
제2절	19
1.	22
2.	25
참고문헌	30
부록(필요시)	32
ABSTRACT	34

(서식 5) 영문요약 양식

ABSTRACT

영문제목

부제

Hong(성) Kil dong(이름)

Department of xxx(영문으로 학과명), Major in xxx
Graduate School of SungKyul University, Anyang Korea

Advisor;Prof. oooo